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7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제27조(별칙 적용에서 의 공무원 의제) 제5조에 따른 위원 회 및 실무위원회 의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과 제 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u>	<u>제27조(별칙 적용에서 의 공무원 의제) (현행과 같음)</u>	<u>제27조(별칙 적용에서 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은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위원</u> <u>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 사기관의 임직원</u> <u>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 직원</u>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90
----------	------

발의연월일 : 2024. 12. 17.

발 의 자 : 강선우·위성곤·임오경
서미화·전현희·김동아
김 윤·진성준·천준호
김윤덕·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7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시험·검사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③ · ④ (생략)	제11조(시험·검사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이 경우 시험·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

④ (생략) <u>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u> <u>의제)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u> <u>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u> <u>이 아닌 위원과 제6조에 따라</u> <u>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u> <u>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u> <u>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u> <u>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u> <u>본다.</u>	<u>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u> <u>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u> <u>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u> <u>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u> <u>「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u> <u>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u> <u>으로 본다.</u> <u>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u> <u>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u> <u>아닌 위원</u> <u>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u> <u>검사기관의 임직원</u> <u>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u> <u>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u> <u>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u>
--	--